

비영리조직의 회계기준

고 영 일

비영리조직에서 회계 부정 및 오류 사고가 빈발하면서 비영리조직에 대한 불신과 함께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회계 부정이나 오류는 내부회계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내부회계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영리조직에게 적용되고 있는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비영리조직(Nonbusiness Organization 혹은 Not-For-Profit Organization)이란 특정인의 이해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영리조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비영리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장학사업, 연구와 학술활동의 영위 내지 지원사업, 교화, 종교사업, 자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을 망라하는 개념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비영리법인을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법에 의하여도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이 있다. 한편 세법에서도 비영리조직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명시된 설립목적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을 비영리법인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서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법인세법시행령 또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비영리조직(공익법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의 재무정보이용자는 매우 다양하나 이익배당, 지분 등이 없어 직접적인 관심이 낮다. 비영리조직은 목표를 위한 자원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보고가 재무보고의 주된 목적이므로 수익성보다는 현금잔고수준이 중시되어 현금주의를 선호한다. 따라서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를 채택하기도 하므로 내부통제 및 재무상태 파악이 곤란하고 강력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며 일반회계는 법인회계로 특별회계는 사업목적별 특별회계 또는 기금회계로 구성되며, 수익사업이 있으면 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된다. 이 각각의 회계는 단위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FASB(미국회계기준위원회)는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목적은 외부의 일반 정보이용자(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조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정보이용자라 함은 비영리조직에 대해 갖는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어 비영리조직이 재무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원하는 정보를 직접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위해 재무정보를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직접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규제기관 등의 특정 이해관계자들은 외부의 일반적인 정보이용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외부의 일반적인 정보이용자의 개념은 영리조직의 재무보고의 목적에 나타나고 있는 정보이용자의 개념과 유사하다.

비영리조직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이용자로는 자원제공자, 수혜자, 감독 및 규제기관, 비영리조직의 경영자 등을 들 수 있다. 자원제공자에는 채권자, 납품업자, 종업원 등과 같이 비영리조직으로부터 자원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받는 사람들과 기부자, 납세자, 조직의 회원 등과 같이 자원제공에 대해 직접적이고 비례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수혜자는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는 사람들이다.

일부 비영리조직의 경우 자원제공자가 동시에 효익을 얻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비영리조직의 경우 자원제공자는 효익의 수혜자가 아니다. 감독 및 규제기관은 비영리조직이 재화나 용역을 의도하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제공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영리조직의 경영자를 평가 및 감독하는 사람들로서 이사회, 해당정부기관의 담당자와 이와 유사한 의무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포함된다. 비영리조직의 경영자는 비영리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정보이용자는 현재 및 미래의 투자자, 채권자 및 기타 정보이용자로 분류되는 영리조직의 정보이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현재 및 미래의 투자자와 채권자는 영리조직에 대한 자원제공자이며 기타 정보이용자는 그 밖의 정보이용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FASB에서 영리조직의 재무보고나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가 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FASB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현재와 미래의 자원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이들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원의 배분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2)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현재와 미래의 자원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비영리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이들이 서비스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원사이의 관계는 비영리조직의 목적달성정도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자원은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비영리조직의 경우도 수혜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조직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거나 미래에 제공할 사람들은 조직이 미래에 제공할 서비스와 과거 성과를 염두에 두고 의사결정을 한다. 따라서 이들은 조직이 현재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을 어떻게 조달해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 3)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현재와 미래의 자원제공자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조직의 관리자들이 관리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의 여부와 관리자들의 기타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관리자들은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물론 이들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의무가 있다. 특히 비영리조직의 경우 영리조직의 이익에 해당하는 성과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비영리조직에 있어서 관리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비영리조직의 관리자들은 법률, 계약 및 기타 제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비영리조직의 관리자의 관리책임에 대한 평가의 초점은 조직의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 이용자들은 관리자가 특정 자원을 자원의 제공자가 의도한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조직의 성과에 대한 정보와 아울러 자원이 제공자의 의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4)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조직의 경제적인 자원, 채무, 순자원 및 이들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거래, 사건 및 상황의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보는 조직에 대한 자원의 제공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재무상태, 일정 기간의 조직의 성과 및 조직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제공할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직의 경제적인 자원, 채무 및 순자산에 대한 정보는 자원으로부터 발생할 현금유입의 잠재력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및 채무의 상황에 필요한 현금유출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는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영리조직에 제공되는 자원은 흔히 자원이 사용될 수 있는 시점과 사용용도에 대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는 조직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보는 채권자들이 조직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의 평가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5)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일정 기간 동안 달성된 조직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측정되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금액 및 종류의 변화에 대한 정보 및 조직에 의해 제공된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된 자원에 대한 정보는 조직의 성과측정에 매우 유용하다.
- 6)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원의 유입 및 유출의 금액과 성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무보고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익과 같이 순자산을 변화시키는 자원의 유입과 추가 차입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자원의 유입을 구별하여야 한다. 재무보고는 또한 제약을 가진 자원의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7)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자원의 유입과 유출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영리조직에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 변화의 내용과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재무보고는 조직의 일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순자산의 변화와 그렇지 않은 순자산의 변화를 구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이들 상이한 순자산의 변화에 대한 원인은 조직의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8)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비영리조직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한 자원에 대한 정보는 조직의 자원이 어떤 활동과 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조직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비영리조직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여 자원의 배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유용하다. 이는 특히 비영리조직의 성과가 영리조직의 성과측정치인 매출, 순이익, 또는 투자수익률 등에 해당하는 측정치에 의해 측정될 수 없으며, 비영리조직에 대한 자원의 제공자들이 이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9)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는 조직이 어떻게 현금과 기타 유동자산을 조달하고 사용하는지, 이들을 차입하고 상환하는 활동 및 기타 조직의 유동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 정보는 조직의 활동을 이해하고, 유동성을 평가하며 또한 성과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다. 조직의 성과, 경제적인 자원, 채무 및 순자산은 조직의 유동성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리기업의 재무보고 기준은 사회 전반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보고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영리조직에 대한 기업회계 관련기준은 1952년에 제정·공포한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상법 개정과 그 밖의 여건변화에 따라 1984년 9월 처음으로 개정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998년 말에 국제적 수준으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모든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 등에 의무 적용된다.

그러나 비영리조직에 대한 재무보고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등에 관하여는 영리조직의 기준에 비견할 만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이다. 그 중 사립대학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원칙에는 못 미치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가지고 있고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이외의 많은 비영리조직에 대해서는 재무나 회계에 관련된 보고기준이나 회계지침이 없고 세법에서는 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세법규정이 없으며 다만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하여 영리조직이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는 상당한 혼란 속에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에 대하여는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식(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규정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음)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비영리조직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을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비영리조직은 여러 개의 회계단위가 회계처리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수차례의 연구검토를 거쳐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지침서를 2003년에 발표하였으나 이 지침서는 관련법령의 규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실무상의 여러 난점이 있어서 실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사학기관 회계체계는 모든 사학기관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과 예산규모가 크고 보다 체계적인 결산이 필요한 사립대학에만 적용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 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복식부기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규모 및 실정에 따라 법인회계와 유치원은 단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단식부기회계를 사용하는 경우 조직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복식부기회계를 사용하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작성되어 자산과 부채가 체계적으로 배열되며 재무구조에 관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단식부기회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재정의 총괄적·체계적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단식부기회계는 상당액의 부채가 있어도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는 한 세입·세출결산

서 상에서는 재정이 건전한 상태인 것처럼 표시되어 미래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인식되지 못하므로 회계정보의 건전성 파악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단식부기회계는 당해연도에 확정된 수입과 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한 미수내용과 미지급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 단식부기회계는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장표에 독립적으로 기록이 될 수가 없어 체계적으로 회계상호간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없고, 오류의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을 할 수 없다.

특례규칙은 사립대학의 예산편성, 회계처리와 결산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이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혼용할 수 있는 데에 비하여 특례규칙은 복식부기회계로 일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례규칙은 기본적으로 예산제도(관·항·목)를 전제로 하고 있고 운영계산(손익계산)의 방법을 당기 운영수익합계에서 당기 운영비용과 기본금대체액 합계를 차감하여 당기운영차액을 계산한다.

당기운영차액은 일반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해석할 수 있다. 특례규칙은 고정자산 구입 등 비운영지출을 운용비용 항목에 추가 계상하지 않으므로 그 해당액 만큼 당기운영차액이 계속증가하게 되므로 계속 증가하는 당기운영차액을 조정하는 방편으로 비용란에 기본금대체액 이라고 하는 특례규칙 특유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회계이론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자본적 지출이 운영차액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금의 수입과 지출(수익과 비용)의 처리가 완전한 실현주의도 발생주의도 아니다. 즉, 자금수입과 지출의 계산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현된 것에 대해서만 인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현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은 기본적으로 취득원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증여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시가는 토지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고 토지 이외의 자산의 시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부실채권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손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접 채권금액에서 차감

표시하므로 이로 인하여 부실채권관리에 오해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의료기관의 재무보고기준으로는 100 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회계 기준 규칙이 있다. 이 규칙에 의하면 법인회계와 병원회계를 구분하도록 하고 있고 재무제표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본금변동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재무제표를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는 막연한 규정만이 있을 뿐 회계 처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의 재무보고기준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예산과 결산, 회계처리의 기준과 방법, 후원금의 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회계를 사회복지조직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인회계, 당해 조직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관한 시설회계, 조직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단식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에 있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발생주의, 복식회계로 회계처리하기 보다는 현금주의, 단식회계를 선호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및 재무보고 기준은 각 조직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어 사회복지조직의 회계 및 재무보고서는 조직 상호간에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적용 받는 조직 이외의 종교, 장학, 학술, 문화, 체육 등 기타 많은 비영리조직에 대하여는 적용하여야 할 회계기준과 처리지침이 없어 회계 실무자들이 나름대로의 관습 및 임의의 기준에 따라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신도 및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계처리기준 마련은 매우 시급하다.

비영리조직은 영리조직에 비하여 이해의 강도는 약하지만 더 많은 사회적 이해관계자를 가지고 있고 부정정한 재무보고나 회계 부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더 클 수 있다. 더욱이 비영리조직은 우리 사회의 연대성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비영리조직의 실패는 사회의 연대성과 결속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비영리조직의 건강한 존속과 성공의 출발점은 회계적 투명성 제고를 통한 사회적 신뢰의 확보이다. 회계적 투명성 제고를 기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비영리조직에 적합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정하고 보편타당한 회계원칙과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

